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파인투모로우 주식회사	제135호	2018.6.20.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30길 41, 4층(사당동, 우주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3호

**시유평허권 처분 공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평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1. 시유평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처분종류 : 통상실시권 허락)

구 분	연 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대기오염물질 흡착 및 제거장치	10-1789233	통상실시권 허락	2017-10-17
특허	2	악취저감 시스템	10-1610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4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6.29.(금)~7.12(목)(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용훈 앞

- 이메일 : hoon0916@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장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내로 한다.

-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유평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 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가격
-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허권이 이용되는 비율(계약체결시 확정함)
- ▷ 기본율 : 기본3% (계약 체결시 확정함)

-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평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용훈(☎ 02-2133-8065, hoon091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수 의 계 약 신 청 서</b> <b>(시유평허권 처분)</b>			
신 청 인	① 명 칭 (대 표 자 )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 0000 호	
⑤ 발 명 ( 고 안 ) 의 명 칭			
⑥ 처 분 의 종 류		<input type="checkbox"/> 매수 <input type="checkbox"/> 전용실시(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 201 . . . ( 년간) 지 역 : 내 용 : (예시)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b>홍길동</b> (서명 또는 인)  <b>서울특별시장 귀하</b>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평허권의 실시예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					
.					
합계					

**5. 시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실시료 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천원/개 × 80% × 3% =96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8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